제 253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2005. 4. 18

농 림 부

"농업 · 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목 차

1. 쌀 협상 경과 1

2. 이행계획서 내용 2

3. 이행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사항 3

4.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4

5. 향후 추진 계획 7

<참고> 이행계획서 수정본

1. 쌀 협상 경과

□ 쌀 협상 추진

○ 쌀 협상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후 **9개국*이 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04.4.21)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 '04. 5월부터 1차협상을 시작하여 미국 9차, 중국 8차 등 **총 50여차례 협상 진행**

□ 쌀 협상 결과 WTO 통보 및 발표('04.12.30)

○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사무국에 통보**

○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동안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것임을 발표

□ WTO 검증('05.1.6~4.6)

○ '05.1.6 WTO사무국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3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통보된 원안대로 확정**

○ 검증기간 동안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문 또는 서한 교환** 등 후속 협의도 마무리

□ WTO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문서 발급 및 확정 내용 발표('05.4.12)

○ **확정된 이행계획서 내용**과 함께 검증기간 중 후속협의를 끝낸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요약하여 발표**

2. 이행계획서 내용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

○ 이행후 5년차인 '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

○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관세화 전환시의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 적용

-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 적용

□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

○ MMA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개국에 **국가별 쿼타 배정**

※ 국가별 쿼타 :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 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을 경우 제한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

○ **밥쌀용 시판물량**은 '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14년까지 30% 유지

3. 이행을 위한 기술적 · 절차적 사항

가. 미국 · 중국 · 태국 · 호주 4개국 공통사항

○ **국가별 쿼타**는 국제 상관행에 따라 **경쟁 입찰 실시**

○ 국내 수요 및 과거 교역실적을 고려하여 입찰 실시

○ 비정상적인 **고가 입찰시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이 가지며 **3회 유찰시 당해 물량은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

○ 국별 쿼타는 **당해연도에 소진**되며 이월불가

나. 미 국

○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공매기관(조달청 · 유통공사 등)을 지정

○ 적절한 보도매체를 통해 **공매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공매계획에 공매일자, 공매물량, 품질, 원산지 및 인수도 조건 등을 포함

○ 당해 연도내 공매완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장기저장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내 공매

○ 수입쌀 입찰규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을 적용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다. 중 국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 장립종 수입쌀 입찰시 **입찰규격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다. 호 주

○ 수입쌀 운송선박의 한국 국적선 이용의무제도가 '01년에 이미 폐지되었음을 확인

○ '07년 이후 **연 1회 이상 상반기 입찰 실시**

○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관련 정보 보호

○ 상기 합의는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적용

4.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가. 중 국

○ '03. 11월 접수하여 총 8단계중 3단계까지 진행중인 **양벚(체리)은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

○ '04. 8월 접수된 **사과·배·롱간(용안)·여지(리치)**에 대해서는 4개 품목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양벚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 이후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속히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

○ 이미 양국간 논의가 진행중인 **식물검역 정례협의회 출범에 노력**하고, 정식출범이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양국의 검역 당국간 회의 개최를 추진**

○ 중국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TRQ품목 입찰절차 관련 사항**은 **한중 경제공동위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중국측 관심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

○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98년이후 **대상품목 축소와 세율인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측이 제시한 관심품목에 대해 '02년, '04년, '05년 반영 내역을 명기

<'02년 반영 내역>

· 제외 3개 품목 : 활미꾸라지, 냉동명태피레트, 면타올

· 감축 3개 품목 : 활농어, 새우젓, 혼합조미료, 면직물, 견직물

<'04년 반영 내역>

· 제외 3개 품목 : 면직물, 견직물, 견사

· 감축 3개 품목 : 활농어, 냉동낙지, 표고버섯

<'05년 반영 내역>

· 제외 1개 품목 : 냉동낙지

· 감축 7개 품목 : 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새우, 표고버섯, 당면, 메주

○ 향후 한·중 통상협력 증진의 필요와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양자 채널에서의 협의**를 통해 **조정관세 대상 품목 축소·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

나. 아르헨티나

○ 검역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가금육(2단계),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WTO협정에 의한 **모든 필요한 자료가 접수된다는 전제**하에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쇠고기**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 착수**

○ 위험평가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한국 검역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입 위험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검역 전문가 상호 방문 추진**

※ 아르헨티나와의 합의서는 '05. 1월 작성되었으나 '05. 4월 현재 3개 품목 모두 아르헨티나측이 **위험평가 관련 자료 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아르헨티나측 검역전문가 2인의 방문은 기 완료('05.3.18 ~3.26)

다. 캐 나 다

○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적용 물량은 2005년도에 45만톤을 유지하고 2006년 이후에는 동 수준 유지 노력

○ 유채유박(0%), 유채 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유채조유(10%→8%), 유채정제유(30%→10%)**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 유채유 대체품목인 대두조유와 대두정제유의 실행관세율은 모두 5.4%임

○ 상기 사항은 DDA협상결과와 관계없이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적용**

라. 인 도 · 이집트

○ MMA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

○ 식량원조의 성격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5. 향후 추진 계획

□ 금번에 확정된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정부내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

SCHEDULE LX – REPUBLIC OF KOREA
PART I: MOST-FAVOURED-NATION TARIFF
SECTION I: Agricultural Products
SECTION I-B: Tariff Quota

1. The Minimum Market Access (MMA) specified in Columns 3 and 4 for the period of 2005/2014 shall increase in equal annual instalments.

2. Review of Special Treatment for rice
Special treatment for rice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10 years until 2014. In the 5th year, there shall be a multilateral review of its implementation.

3. Allocation of the MMA

3.1 Existing MMA volume of 205,228 metric tons, milled basis, shall be allocated to the following Members based on the historical trade flows from 2001 to 2003(*Country-Specific Quotas (CSQs)*.

China	116,159 metric tons, milled basis
United States	50,076 metric tons, milled basis
Thailand	29,963 metric tons, milled basis
Australia	9,030 metric tons, milled basis

3.2 Future growth in the MMA volume shall be administered on an MFN basis (global quota). A limited portion may be allocated for domestic needs for specialty rice.

3.3 In the case of the cessation of special trea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entire volume of the CSQs shall be subject to global quota on an MFN basis.

4. Cessation of Special Trea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4.1 At the beginning of any year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special treatment (2005/2014), the Republic of Korea may cease to apply the special treatment. In such a case, the products concerned shall be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4.2 The tariff rate for the year 2005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tariff equivalent,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pplied until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In case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tariff rate shall be modified, reflecting such an outcome.

4.3 After the cessation of special treatmen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maintain the MMA volume already in effect at such time. In case such volume is not equivalent to the volum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greater of the two shall be applied.

5. Import Mark-up
The Republic of Korea may impose import mark-up according to '*Note 4' of the UR Country Schedule.

6. Utilization of Imported Rice

6.1 The objective is to ensure that rice imported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s shall have access to domestic marketing channels for table and non-table rice.

6.2 The volume of imported rice distributed into the Korean market for table use (hereinafter "table rice") shall be phased in from no less than 10 perc ent to no less than 30 percent of the total MMA volume by the sixth year of implementation period, in equal increments over the six year period. T able rice including quality rice shall have access to normal marketing channels, wholesalers, distributors and end users. Table rice shall be markete d in a timely fashion so that its quality for table use is not adversely affected by the storage time.

6.3 Separate from and in addition to the utilization of table rice as stipulated above, volume of imported rice distributed into the Korean market for no n-table use shall reflect recent patterns of distribution.

Description of products	Tariff item number(s)	Initial quota quantity and in-quota tariff rate	Final quota quantity and in-quota tariff rate	Implementation period from/to	Initial negotiating right	Other terms and conditions
1	2	3	4	5	6	7
Rice in the husk(paddy or rough)	1006-10-0000 * ST-Annex 5	51,307 M/T (5%)	102,614 M/T (5%)	1995/1999		*Nonglutinous milled rice basis
Rice(Hulled / Nonglutinous)	1006-20-1000 * ST-Annex 5	102,614 M/T (5%)	205,228 M/T (5%)	2000/2004		* Note 4
Rice(Hulled /Glutinous)	1006-20-2000 * ST-Annex 5	225,575 M/T (5%)	408,700 M/T (5%)	2005/2014		
Rice(Milled or semi-milled /Non-glutinous)	1006-30-1000 * ST-Annex 5 1006-30-2000					
Rice(Milled or semi-milled /Glutinous)	* ST-Annex 5 1006-40-0000					
Rice(Broken)	* ST-Annex 5 1102-30-0000					
Rice flour	* ST-Annex 5 1103-19-3000					
Rice(Groats and meal)	* ST-Annex 5 1103-20-2000					
Rice(Pellets)	* ST-Annex 5 1104-19-1000					
Rice(Rolled or flaked grains)	* ST-Annex 5 1806-90-2290					
Other food preparations (Other)	* ST-Annex 5 1806-90-2999					
Other food preparations (Other)	* ST-Annex 5 1901-20-1000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rice flour)	* ST-Annex 5 1901-20-9000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ther)	* ST-Annex 5 1901-90-9091					
Other food preparations (Of rice flour)	* ST-Annex 5 1901-90-9099					
Other food preparations (Other)	* ST-Annex 5					

이행계획서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B절 : 관세할당

1. 제3열 및 제4열에 명시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매년 균등하게 증가한다.

2. 쌀에 대한 특별대우의 검토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로 10년간 연장된다. 제5년차에 이의 이행에 관한 다자간 검토를 실시한다.

3.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할당

3.1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 205,228톤(정곡기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다음 회원국들에게 할당된다(국별쿼타).

중국	116,159톤 (정곡기준)
미국	50,076톤 (정곡기준)
태국	29,963톤 (정곡기준)
호주	9,030톤 (정곡기준)

3.2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총량쿼타). 제한된 물량이 특수한 용도의 쌀에 대한 국내수요를 위해 할당될 수 있다.

3.3 이행기간중 특별대우가 중단되는 경우나 이행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상기 국별쿼타 총물량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총량쿼타가 적용된다.

4. 이행기간중 특별대우의 중단

4.1 대한민국은 특별대우의 이행기간(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 각 년도의 개시시기에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반관세가 적용된다.

4.2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설정된 2005년도 관세율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된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가 발효한 이후에 특별대우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관세율은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4.3 특별대우가 중단된 이후 대한민국은 그 시점에서 유효한 최소시장 접근 물량수준을 유지한다. 그러한 물량수준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물량 수준과 상응하지 않는 경우, 이중 더 높은 수준의 물량이 적용된다.

5. 수입부과금

대한민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Note 4'에 따라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수입쌀의 이용

6.1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된 쌀이 밥쌀용 및 그 외 용도로 국내 유통경로에 접근하는 것이 보장된다.

6.2 밥쌀용으로 대한민국의 시장으로 유통되는 수입쌀(이하 "밥쌀용 쌀")의 물량은 이행기간의 제6년차까지 6년 동안 총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10퍼센트 이상으로부터 30퍼센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균등하게 증가한다. 고품질 쌀을 포함하여 밥쌀용 쌀은 통상의 유통경로, 도매상,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에게 접근이 허용된다. 밥쌀용 쌀은 저장기간으로 인하여 밥쌀용 쌀로서의 품질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내에 유통된다.

6.3 상기 규정된 밥쌀용쌀의 이용과는 별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시장에서 밥쌀용 이외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수입쌀 물량은 최근의 유통형태를 반영한다.

품 목 명	세 번	초기 할당물량 및 할당물량내 관세율	최종 할당물량 및 할당물량내 관세율	이행기간 (부터/까지)	초기협상권	기타조건
1	2	3	4	5	6	7
벼	1006-10-0000 *ST-Annex5	51,307 톤 (5%)	102,614 톤 (5%)	1995/1999		* 멥쌀 기준 * Note 4
메현미	1006-20-1000 *ST-Annex5	102,614 톤 (5%)	205,228 톤 (5%)	2000/2004		
찰현미	1006-20-2000 *ST-Annex5	225,575 톤 (5%)	408,700 톤 (5%)	2005/2014		
멥쌀	1006-30-1000 *ST-Annex5					
찹쌀	1006-30-2000 *ST-Annex5					
쇄미	1006-40-0000 *ST-Annex5					
쌀가루	1102-30-0000 *ST-Annex5					
쌀의 분쇄물 및 조분	1103-19-3000 *ST-Annex5					
쌀의 펠리트	1103-20-2000 *ST-Annex5					
쌀의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1104-19-1000 *ST-Annex5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을 제외한다)	1806-90-2290 *ST-Annex5					
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한다)	1806-90-2999 *ST-Annex5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중 쌀가루의 것	1901-20-1000 *ST-Annex5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한다)	1901-20-9000 *ST-Annex5					
기타 조제식료품중 쌀가루의 것	1901-90-9091 *ST-Annex5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한다)	1901-90-9099 *ST-Annex5					